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05779 판결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지배인 C

피 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허범녕

변론 종결 2019. 12. 18

판결 선고 2020.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7,4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서울 강서구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11. 3. 원고에게 이 사건공사중 커튼월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원·피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경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직접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8. 8. 27.까지 하수급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41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갑 제2호증)의 원본은 제출하지 아니한 채 사본만을 제출하였는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작성일은 수기로 "2017(년) 11(월) 7(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97,417,000원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을 당시에는(이 법원 2018카단2131호) 같은 증거에 작성일을 공란으로 하여 소갑제3호증으로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1. 8. 이전에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증거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7. 11. 7. 내지 2017. 11.경 원고 주장과 같은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7. 11.부터 2018. 8.까지 매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원고는 2018. 8. 31. 소외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8. 9. 12. 소외 회사에 기성고 대금 89,030,000원을 직접 지급한 후 2018. 11. 1.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2건의 가압류결정을 받자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년 금제3150호로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98,252,727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1.경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송주희